

의안번호	2207297
의 퇴 인	이종욱 의원
회 답 일	2025. 1. 10.
추 계 번호	25F0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말에서 2027년말로 2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26억원, 2032년 11억원 등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총 196억원(연평균 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제도의 세액감면이 5년간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효과는 2032년까지 발생
 - t년에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t+1~t+3년)간 100%, 이후 2년(t+4~t+5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소득세, 2027~2032년

(단위: 억원)

	'27	'28	'29	'30	'31	'32	누적	연평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 2년 연장(안 제85조의6제2항)	-26	-53	-48	-35	-23	-11	-196	-33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5조의6제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85조의6 제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세수 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확정신고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동 제도의 세액감면이 5년간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효과는 2032년 까지 발생
 - t년에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t+1~t+3년)간 100%, 이후 2년(t+4~t+5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
 - 따라서, 2026~2027년의 신규 인증기업으로 인한 세액감면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발생

[표 2] 개정안에 따른 세액감면 흐름: 2027~2032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26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2027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향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연평균 증가율

(8.6%)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기업의 비중은 2023년 법인세 신고 기준 전체 법인수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48.1%)을 따른다고 가정
- 1기업당 감면액은 2023년 기준 감면액(0.37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연차별 인증 유지비중은 2024년 수준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3.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 동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2011년 도입되었으며, 이후 감면기한 연장, 감면율 인상, 감면한도 설정 등 내용으로 개정
 - 2013년 개정: 감면기한을 종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 2014년 개정: 감면율이 종전 5년간 50%에서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로 인상
 - 2020년 개정: 장애인 고용과 연계되도록 감면한도를 설정
 - ※ 감면한도 = 1억원 + (장애인 상시근로자수 × 2천만원)
- 동 제도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당 사업으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100% 감면
 - 감면율: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 (감면실적) 최근 5년간 동 제도에 따른 감면 규모는 2019년 49억원에서 2021년 75억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23년 기준 54억원으로 수준

- 동 감면의 대부분은 법인세에서 발생

[표 3]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49	72	75	55	54
－ 법인세	36	56	63	47	47
－ 소득세	14	16	11	7	6

주: 연도는 신고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나.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6~2027년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기업 수를 추정한 후, 연차별 인증 유지 비중 및 1기업당 감면액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출

- 신규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는 2018년 72개에서 2023년 109개로 증가
 - － 2019~2023년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 연평균 증가율: 8.6%

[표 4]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 2018~2023년

(단위: 개,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19~23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	72	82 (13.9)	97 (18.3)	119 (22.7)	94 (△21.0)	109 (16.0)	8.6

주: ()안은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사업체 현황(2024.9.30.기준)

-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6~2027년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를 추계한 후, 2023년 기준 법인세 신고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을 반영하여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를 추계
 - － 2023년 기준 법인세 신고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 비중: 48.1%
 - ※ ’23년 기준 법인세 신고법인 수: 103.1만개, 총부담세액 발생법인 수: 49.6만개

[표 5] 향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 및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 2026~2027년
(단위: 개)

	2026	2027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 추정치(A)	152	165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A×48.1%)	73	79

-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 2024년 9월 기준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비중은 n년전 인증을 취득한 기업 대비 인증을 유지한 기업의 비중으로 추정

[표 6]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 2024년 9월 기준

(단위: 개, %)

	1년차 (2023)	2년차 (2022)	3년차 (2021)	4년차 (2020)	5년차 (2019)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득기업 수(A)	109	94	119	97	82
'24.9. 기준 인증 유지기업 수(B)	106	84	98	80	64
비중(B/A×100)	97.2	89.4	82.5	82.4	78.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사업체 현황(2024.9.30.기준)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표 7]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 2027~2035년

(단위: 개)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26년 인증	71	65	60	60	57	
2027년 인증		77	71	65	65	62

주: [표 5]의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표 6]에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을 곱하여 추정

- 2023년 기준 1기업당 감면액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세수효과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2023년 기준 1기업당 감면액: 0.37억원
 - ※ 0.37억원 = 2023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액(53.7억원)/감면대상 기업수(145개)
 - 단, 최초 감면 발생 이후 4년차 및 5년차에는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축소

됨을 반영하여 추정

[표 8]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액 추정치: 2027~2035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26년 인증	26	24	22	11	11	
2027년 인증		29	26	24	12	11
계	26	53	48	35	23	11

주: [표 7]의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에 1기업당 감면액 및 연차별 감면율을 반영하여 추정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말에서 2027년말로 2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26억원, 2032년 11억원 등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총 196억원(연평균 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소득세, 2027~2032년

(단위: 억원)

	'27	'28	'29	'30	'31	'32	누적	연평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 2년 연장(안 제85조의6제2항)	-26	-53	-48	-35	-23	-11	-196	-33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